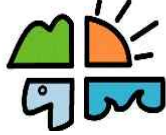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374호 2022년 3월 7일(월)

입법예고

- 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

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3월 7일

속 초 시 장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2. 제정이유: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.
3. 주요내용
 - 가. 의용소방대 지원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안 제2조)
 - 나.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- 다. 구호활동 등 기여자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4. 자치법규안 : 붙임 1
5. 의견제출: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3월 28일까지 속초시장
(참조 : 안전총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직접방문등

라. 제출서식 :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(붙임 2)

1) 전자우편(이메일) : kimth3309@korea.kr

2) 주소 :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안전총괄과(안전총괄팀) / 우) 24826

3) 연락처 및 팩스 : 033-639-2759(fax 033-639-2588)

라.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☎ 033-639-2759)

[붙임 1]

속초시 조례 제 호

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·구급 등의 소방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속초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

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범위) 속초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
2.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에 필요한 비용
3.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소방홍보 경비
4. 의용소방대원 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경비
5. 그 밖에 재난대응을 위한 의용소방대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

제3조(포상) 시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·구호 활동, 화재 예방활동 등에 기여한 단체나 사람에게 「속초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4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 례 명 : 속초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견	비 고
	찬성	반대		